

稅源分布의 地域的 不均衡과 地方稅源調整의 方向*

吳 然 天

<차 례>

- | | |
|-----------------------|-----------------------|
| I. 序 | 3. 稅目別 地方稅收入의 地域別 分布 |
| II. 地方歲入構造的 地域間不均衡 | (1) 地域單位間 稅源分布 |
| III. 稅源分布의 地域的 不均衡 實態 | (2) 稅源의 自治團體別 分布 |
| 1. 地方稅의 評價基準 | 4. 國稅의 地域別 分布 |
| 2. 「稅源의 地域的 分布」의 評價方法 | IV. 分析結果의 綜合的 評價 및 結論 |

I. 序

地方自治制 실시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地方財源의 擴充이 地方部門 當面課題의 하나로서 부각되고 있다.

地方財源의 擴充에는 두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절대적 의미에서 地方部門에의 配分財源規模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간, 자치단체간의 財政의 不均衡을 완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地方財政의 절대적 수준을 現在보다 높게 하는 과제와 동시에 「均衡發展」, 「지역격차의 해소」等 國家的·社會的 政策目標 달성을 위한 地方財政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라는 과제가 항상 결부되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과 관련한 이러한 두가지 과제중에서 地方稅源을 중심으로 하여 稅源의 지역적 분포와 이의 불균형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地方財政의 地域的 不均衡은 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과 3개 직할시에 地方稅源의 10%정도('85년도 예산기준)가 집중되어 있으며 地方稅外收入의 경우도 同地域에 63%정도('85년도 예산기준 一般會計分과 特別會計分을 합한 規模임)가 偏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稅源이나 課稅標準의 地域的 分布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실정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地方稅目과 國稅稅目的 地域別 분포가 어떠한지 地方稅 稅目別 地域的 隔差의 相對的 水準差異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

* 본 연구에는 본 大學院의 郭彩基 碩士와 李泰龍 助敎의 도움이 컸음.

악하는데 기본 취지가 있다.

本 연구는 우리나라 地方歲入構造의 地域的 不均衡을 地方稅收入의 地域的 偏在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러한 地方稅源의 地域的 分布의 實狀을 分析해 보면서 稅源分布의 實態가 國稅·地方稅 調整 또는 地方稅源擴充 방향의 모색에 미치는 政策的 意味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稅源分布의 分析을 위해서 加重變異係數라는 分析技法을 導入하여 地方稅源의 地域別 分布의 隔差를 測定해 보고자 하며, 이러한 地方稅의 지역적 격차의 수준을 國稅의 그것과 비교·평가함으로써 「稅源의 分布」라는 側面에서 國稅 稅目中 地方稅源으로 移讓 가능한 稅目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탐색해 보기로 한다. 끝으로 이러한 分析 結果 더욱 명료해기 稅目別 分布實態를 중심으로 하여 政策的 意味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地方歲入構造의 地域間不均衡

地方政府의 歲入源은 이를 地方稅, 地方稅外收入 등과 같은 自主財源과 地方交付稅, 補助金 등으로 이루어지는 依存財源으로 區分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歲入源의 구성비가 지역별로 심한 불균형상태를 노정하고 있다.

우선 1981년 결산자료에 의하여 地方財政의 일반회계·특별회계 純計規模를 기준으로 해서 地方稅收入의 규모와 구성비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道」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道가 아니고, 地域的인 개념으로서의 「道」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道를 포함하여 그 지역내에 있는 市·郡을 모두 합한 것이다. <表 1>에 따르면 全體 地方歲入에서 地方稅收入이 차지하는 비중이 全國平均의 24.5%를 上廻하는 지역으로서는 서울 37.3%,

<表 1> 地方歲入源別 構成比(84年 一般會計·特別會計 決算 純計基準)

구 분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경 기	강 원
세 입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방세 수입	24.5	37.3	24.1	32.3	34.3	25.9	9.5
세 외 수입	51.1	61.1	70.0	59.3	62.4	52.0	39.8
지방교부세	16.6	—	0.9	2.3	1.0	15.7	35.5
보 조 금	7.8	1.6	5.0	6.1	2.3	6.4	15.2
구 분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세 입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방세 수입	12.2	21.1	16.0	14.8	15.6	18.1	16.4
세 외 수입	46.6	35.9	35.5	42.1	35.1	43.3	33.7
지방교부세	32.7	28.2	33.5	31.7	37.0	26.1	38.5
보 조 금	8.5	14.8	15.0	11.4	1.3	12.5	11.4

자료: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1985.

〈表 2〉 地方歲入源別 構成比(84年 一般會計 決算純計基準)

구 분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경 기	강 원
세 입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방세 수입	36.8	64.8	66.7	55.0	66.6	36.5	11.8
세 외 수입	28.0	33.0	26.0	32.2	28.2	33.2	26.8
지방교부세	24.9	—	2.6	3.9	1.9	22.2	44.2
보 조 금	10.3	2.2	4.7	8.9	3.3	8.1	17.2

구 분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세 입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방세 수입	16.5	25.6	19.0	19.9	18.1	24.6	19.7
세 외 수입	28.8	23.8	24.4	23.5	25.5	23.8	20.4
지방교부세	44.4	34.2	39.9	42.7	43.1	35.4	46.4
보 조 금	10.3	16.4	16.7	13.9	13.3	16.2	13.5

자료 : 내부부, 지방재정연감, 1985.

부산 24.1%, 대구 32.3%, 인천 34.3% 등 대부분이 대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道단위 지역으로서의 공업지역이 많은 경기도만이 포함되고 있을 뿐이다. 그밖의 道단위 지역에 있어서는 충남의 21.1%, 경남의 18.1%를 제외하면 地方稅收入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강원(9.5%), 충북(12.2%), 전남(14.8%) 등은 1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地方歲入에서 차지하는 地方稅收入의 비중이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地方歲入에서 地方稅收入이 차지하는 比重의 地域間不均衡은 一般會計에 있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表 2〉는 1984년 결산순계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회계의 歲入源別 구성비를 나타낸 것인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 64.8%, 부산 66.7%, 인천 66.6%, 대구 55.0% 등 대도시지역에 있어서는 地方稅가 歲入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나 道單位지역에 있어서는 강원 11.8%, 충북 16.5%, 경북 18.1% 등 20%수준을 넘지 못하는 道가 대부분으로서 地方稅收入比重의 지역간격차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경기, 충남, 경남 등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他 道單位地域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地方稅收入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地方稅와 더불어 또다른 地方自主財源의 하나인 地方稅外收入의 地域別 分布를 살펴보기로 한다. 〈表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회계·특별회계의 總歲入에 있어서 地方稅外收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평균 51.1%수준에 이름으로써 地方歲入源중 가장 높은 歲入比重을 占하고 있다. 그 지역별 분포에 있어서도 부산 70.0%, 인천 62.4%, 서울 61.1%, 대구 59.3% 등 대도시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歲入比重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여타 道단위지역도 35~50% 내외에 분포함으로써 地方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른 지역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地方稅收入의 比重이 15%미만에 불과한 강원, 충북, 전남 등도

地方稅外收入의 비중이 있어서는 각각 39.8%, 46.6%, 42.1%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表 2>에 표시된 바와같이 地域間 地方稅外收入의 비중이 더욱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地方交付稅와 補助金 등 依存財源의 지역적분포는 地方稅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表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4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순계규모 기준으로 地方稅의 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등의 지역에서 地方交付稅의 비중이 전국평균수준인 16.6%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 35.5%, 32.7%, 31.7%, 37.0%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地方稅의 비중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지역에 있어서는 地方交付稅의 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道單位지역으로서는 地方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경기, 충남, 경북 등의 지역에 있어서 地方交付稅의 비율은 他道地域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補助金의 경우에는 地方稅와 補助金 兩者의 비중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地域(경북)」과 「높은 地域(경남, 충남)」이 있는 등 다소의 불규칙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地方稅의 비중이 낮은 지역에서 보조금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반면에 지방세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조금이 낮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地方交付稅와 國庫補助金 등 依存財源이 稅源의 편재로 인한 地方財政力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거로하여 판단해 보건데 地方歲入構造의 地域間 不均衡을 형성하는 가장 주요한 因子는 바로 地方稅源分布의 地域間 不均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地方稅源의 地域別 分布의 불균형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地方歲入의 지역간 불균형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I. 稅源分布의 地域的 不均衡 實態

1. 地方稅의 評價基準

여러가지 다양한 稅目中에서 어떠한 것이 地方稅로서 適合한 것인가 또는 現行 地方稅가 과연 地方稅로서 적합한 側面을 지니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論함에 있어 판단 및 평가의 기준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다.

우선 K. J. Davey 교수는 地方稅로서 적합한 원칙으로서 充分性 및 彈力性(adequacy and elasticity), 衡平性(equity), 行政管理妥當度(administrative feasibility), 政治的 受容(political acceptability)의 네가지 基準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V. Wittmann 교수는 地方稅로서 適合한 다섯가지 基準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地方稅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政需要에 對應할 수 있을만큼 伸張性이 있고 充分한 수입을 提供하는 것이어야 한다(伸張性). 둘째, 地方稅는 國稅와 달라서 景氣感應적이어서는 안된다(安定性). 셋째, 地方稅는 住民의 責任意識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負擔分任性). 넷째, 地方稅는 地域적으로 보편적이고 財政需要를 可能한 限 平等히 補填하는 것이어야 한다(普遍性). 다섯째, 地方稅는 企業의 立地나 競争에 있어서 中立을 維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基準은 地方稅가 지니고 있는 特徵的 性格을 예시적으로 부각시킨 상대적인 기준에 불과할뿐 地方稅의 評價에 있어 배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반적으로 地方稅로서 적합한 기준으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資源配分機能의 效果의인 수리과 관련한 能率性,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원부담의 원칙으로서의 應益性, 稅源의 地域的 分布, 稅收의 安定性, 地域經濟活動을 比例的으로 반영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地方單位の 稅務行政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地方稅收入이 몇몇 대도시와 일부지역에 편중분포되어 있는 우리의 경우 課稅對象이 되는 稅目的 稅源이 全國적으로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地方稅의 評價基準에 있어 가장 우선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간주되고 있다. 즉 어떤 租稅의 課稅基礎가 지역적으로 크게 不均衡한 것이라면 中央政府(또는 上位政府)의 稅源으로 배정하고 課稅基礎가 상대적인 관점에서 均衡的인 分布를 보이는 것이라면 地方自治團體(또는 下位政府)의 稅源으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課稅對象이 되는 稅源의 地域的 격차가 심할 경우, 이에 대한 地方稅의 賦課가 歲入構造의 地域的인 不均衡을 촉진시켜 결국 不均衡 是正을 위한 中央政府의 追加的인 努力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地方自治團體(또는 下位政府)의 基幹이 되는 財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上記한 諸 地方稅評價基準 중에서 下位政府稅源의 評價基準으로서 가장 중시되는 「稅源의 分布」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 「稅源의 地域別 分布」의 評價方法

地方稅源分布의 地域別 不均衡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標準偏差, 지니係數(Gini Coefficient), 變異係數(Coefficient of Variation) 등을 들 수 있다.⁽¹⁾ 이중 표준편차는 度數分布에 있어서 절대적인 分散度를 측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相對的인 分散度를 측정하는데는 미흡한 方法이며,⁽²⁾ 지니係數는 계산하는데 다소의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표준편차의 산술평균에 대한 비율로서 표시되는 變異係數를 이용하여 地方稅源分布의 地域的 격차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變異係數는 度數의 상대적인 분산도를 측정하는데 유용

(1) 이러한 방법들은 地域所得隔差를 측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들인데 稅源의 地域間 分布의 격차를 측정하는데도 그대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金安濟, 環境과 國土(서울: 박영사, 1979), pp. 373-377 참조.

(2) 노호준, 행정계량분석(서울: 법문사, 1985), pp. 57-58.

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방소득격차의 연구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J.G. Williamson은 단순한 變異係數를 사용하지 않고 지역의 인구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한 加重變異係數를 사용하고 있다. 本稿에서도 稅源의 상대적인 분포와 그 격차를 측정 하되, 稅收入의 규모가 당해지역의 인구규모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당해지역의 인구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한 加重變異係數를 통하여 稅源의 分布를 살펴보기로 한다. (3) 稅源의 地域的 隔差를 測定하기 위한 加重變異係數를 數式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text{加重變異係數}(CV) = \frac{\sqrt{\sum (y_i - \bar{y})^2 \cdot P_i / p_i \cdot n}}{\bar{y}} \times 100$$

y_i = i 지역의 1人當 稅收入

\bar{y} = 全國의 1人當 平均稅收入

n = 地域의 數

p_i = i 地域의 人口

p_i = 全國의 人口

3. 稅目別 地方稅收入의 地域的 分布

제 2 장을 통하여 地方歲入構造의 지역적불균형이 주로 地方稅收入의 지역간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地方稅收入의 지역간 불균형이 어떠한 地方稅目에 의해 發生되고 있으며 그 不均衡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는 없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各稅目別 地方稅收入의 지역별 점유비와 가중변이계수의 측정을 통하여 地方稅源의 지역별 분포의 실상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地方稅源의 地域別 分布라는 의미는 본래적인 지역개념인 13개 市道의 地域單位間 稅源分布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속에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별 세원분포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지역단위간 세원분포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별 세원분포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1) 地域單位間 稅源分布

가중변이계수를 통하여 稅目別 地方稅收入의 지역간 분포를 측정하기에 앞서 우선 稅目別 地方稅收入의 지역별 점유비를 살펴보기로 한다. <表 3>은 1984년도 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稅目別 地方稅收入의 지역별 점유비를 나타낸 것이다. 地方稅全體 稅入合計의 地域分布도에 있어서는 서울이 4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 11.4%, 부산 9.6%, 경남 6.7%, 대구 5.0%, 전남·충남 4.9%, 인천 4.5%, 경북 4.4%, 전북 3.4%, 강원 2.2%, 충북 2.0%, 제주 0.8% 등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서울, 부산, 대구,

(3) 地方歲入源의 하나인 地方稅外收入의 규모에 있어서도 인구밀도보다는 인구규모의 설명력이 더 높음이 밝혀졌다. 즉 稅外收入의 규모와 인구밀도, 인구규모간의 회귀분석에서 결정계수가 각각 0.13, 0.99로 나타나 稅外收入규모와 인구규모간의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拙稿,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역할」, 행정논총 Vol. XXIII, No. 2(서울大 行政大學院, 1985), pp. 111-112 참조.

(4) 黃明植, 地域開發論(서울:경영문화원, 1984), pp. 24-25.

〈表 3〉 稅目別 地方稅收入의 地域別 占有比(1984)

단위 : %

세 목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地方稅計	40.3	9.6	5.0	4.5	11.4	2.2	2.0	4.9	3.4	4.9	4.4	6.7	0.8	100.0
취득세	37.5	10.1	5.0	5.7	14.4	2.2	2.0	4.8	2.5	4.7	3.8	6.6	0.7	100.0
등록세	45.7	10.5	5.6	5.6	12.5	1.6	1.6	4.1	1.9	3.3	2.6	4.5	0.6	100.0
면허세	44.2	11.5	7.6	4.5	6.4	2.1	1.8	5.1	2.3	4.7	3.6	5.5	0.8	100.0
주인세	49.9	9.2	3.7	3.7	7.9	1.9	1.9	3.4	2.6	4.1	4.4	6.9	0.5	100.0
재산세	38.2	10.7	5.8	3.9	10.0	2.4	1.8	4.8	3.2	5.7	5.1	7.4	1.0	100.0
자동차세	53.9	8.9	5.6	2.7	6.9	2.0	1.6	3.7	2.2	3.5	3.4	4.8	0.7	100.0
농지세	0.1	0.3	0.2	0.1	14.4	3.7	6.2	15.5	17.0	14.9	13.8	9.1	2.7	100.0
도축세	24.6	8.0	4.4	4.1	14.3	6.0	3.3	6.8	3.8	7.2	6.2	10.2	1.0	100.0
마련세	100.0	—	—	—	—	—	—	—	—	—	—	—	—	100.0
도시계획세	43.3	11.6	6.9	4.5	7.9	2.1	1.4	3.8	2.7	4.3	3.9	6.8	0.9	100.0
소방공·시설세	37.4	10.1	5.8	5.2	10.6	2.1	1.6	4.4	2.8	4.9	4.9	9.5	0.9	100.0
사업소세	32.1	11.0	4.3	6.2	13.1	2.5	2.0	3.6	2.2	3.4	6.4	13.1	0.4	100.0

자료 : 1. 무부, 지방재정연감, 1985.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지역에 全體稅收入의 75.3%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1別 稅目別 稅收入의 지역별 점유비는 全體 地方稅收入의 점유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稅收比重이 높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남 등의 지역에서는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등의 稅目이 他稅目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全體歲入中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강원, 전남, 충북, 경북 등은 農地稅나 도축세 등의 稅收入比重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稅收入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2차, 3차산업의 활동과 관련된 세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세수입의 비중이 낮은 지역은 농업과 같은 1차산업활동에 관련된 세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地方稅源分布의 지역간 불균형의 이면에는 地域間 經濟力의 불균형분배가 內在되어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그러나 稅收入의 지역별 점유비율만을 가지고서는 稅源의 지역간 분포나 격차를 엄밀히 측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수입의 지역별 점유비는 全體稅收中 당해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稅形의 절대액의 규모만을 나타내고 있을뿐 지역의 범위나 면적, 인구규모에 따른 상대적인 稅源分布度의 차이나 개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稅源의 상대적인 크기의 差異 등을 나타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는 상대적인 度數分布의 분산도를 나타내주는 加重變異係數를 통하여 稅源의 상대적인 분포나 그 격차를 측정해 보기로 한다.

〈表 4〉는 13개 市·道의 1人當 地方稅收入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지역의 人口比重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계산한 地方稅 稅目別 加重變異係數를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 稅源이 완전

(1인당 1원 기준)

〈表 4〉 地方稅 稅目別 加重變異係數 分析結果⁽¹⁾

區分 稅目別	地 域 別 1 人 當 平 均 稅 收 入													加 重 係 數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全 國 均	加 重 標 準	加 重 係 數
취득세	14,198	10,186	8,847	16,361	11,677	4,136	4,750	5,307	3,605	4,114	4,034	6,367	5,050	7,587	1,219.62	16.08
등록세	17,022	10,389	9,777	15,840	9,970	2,841	3,581	4,506	2,706	2,837	2,682	4,287	4,166	6,970	1,627.25	23.35
면허세	1,511	1,050	1,224	1,176	468	359	378	510	305	375	344	479	521	669	135.60	20.27
주민세	9,896	4,855	3,428	5,546	3,357	1,825	2,287	1,990	1,972	1,858	2,421	3,519	1,949	3,454	902.82	26.14
재산세	9,019	6,711	6,413	6,897	5,030	2,835	2,662	3,352	2,930	3,119	3,353	4,443	4,518	4,714	674.83	14.32
자동차세	6,268	2,767	3,023	2,412	1,704	1,115	1,169	1,272	997	943	1,114	1,436	1,615	1,987	600.45	30.22
농지세	15	79	99	89	3,646	1,868	4,002	4,727	6,783	3,565	4,013	2,421	5,263	2,813	598.06	21.26
도축세	351	303	297	447	436	421	294	283	213	238	250	370	258	320	19.22	6.01
마련세	609	—	—	—	—	—	—	—	—	—	—	—	—	47	75.30	160.20
도시계획세	4,873	3,475	3,648	3,861	1,907	1,142	992	1,243	1,186	1,115	1,216	1,971	1,840	2,190	430.40	19.65
소방공동세	1,448	1,046	1,043	1,507	877	405	365	497	424	438	538	937	617	780	115.53	14.81
사업초세	1,998	1,821	1,260	2,907	1,745	751	755	650	533	481	1,114	2,083	469	1,274	189.08	14.84
地方稅計	68,121	43,140	39,385	57,598	41,156	17,930	21,310	24,458	21,835	19,196	21,176	28,782	26,584	33,129	5,383.07	16.25
담배세	45,964	39,663	38,481	27,092	43,949	33,031	28,424	29,001	25,892	26,115	30,045	35,413	36,215	37,791	2,218.10	6.53

註(1) 人口 규모는 1982년 현재 市道別人口를 기준으로 함.
자료: 內務部, 地方稅政年鑑(1985)에 의거하여 작성.

히 균형을 이룰 때에는 가중변이계수가 0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 不均衡의 정도가 심화되면 될수록 가중변이계수의 절대값도 커지게 된다.

〈表 〉에 따르면 地方稅全體의 가중변이계수가 16.25로 나타났으며,⁽⁵⁾ 취득세는 16.08, 등록세 23.35, 면허세 20.27, 주민세 26.14, 재산세 14.32, 자동차세 30.22, 농지세 21.26, 도축세 6.01, 마권세 160.20, 도시계획세 19.65, 소방공동시설세 14.81, 사업소세 14.84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때 전체 지방세 수입중 76%('84년 예산기준) 내외의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財產關聯課稅中 財產稅,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이 비교적 고른 地域別 분포를 보이고 있을뿐, 稅收比重이 높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지역적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동차세는 재산관련과세중 가장 큰 지역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 주민세도 가중변이계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住民稅 所得割과 관련된 소득분포가 전국적으로 고르지 못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재산가치나 소득의 지역별 분포가 상당히 불균형적인 상태에 있으며, 특히 대도시 등 일부지역에 편재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도축세는 地方稅目中 가장 고른 지역별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농지세제의 개혁으로 인한 稅收의 결함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매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흡수하는 형식으로 고안된 담배판매세의 가중변이계수가 6.53으로 나타나 기존의 어떠한 지방세목보다도 고른 지역적 분포를 보이고 있어서 「稅源의 分布」라는 측면에서 담배판매세의 지방세원으로서의 適合性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地方稅收入의 지역적 격차는 재산세, 사업소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財產關聯稅目 稅源의 지역적 분포의 격차로 인하여 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세의 지역적분포의 격차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國稅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그 수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稅源의 自治團體別 分布

위에서는 지방세의 지역간분포를 중심으로 세원의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원분포와 그 격차를 살펴보고 이를 지방세의 지역간 분포와 비교·평가해보기로 한다.

세원분포의 지역적 불균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또다른 측면은 地方自治의 근간을 이루는 市·郡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表 5〉에 의하면 60년대 이래로 전체 地方稅收入 중에서 서울특별시, 직할시, 道가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市·郡이 차지하는 地方稅의 비중이 점차 줄어

(5) 83% 정수실적을 기준으로 한 가중변이계수분석에 있어서는 全體地方稅收入의 경우 가중변이계수가 17.91로 나타났는데, 이를 84년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稅源分布의 불균형의 정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 수 있다.

〈表 5〉 地方自治團體別 地方稅收入 比重의 推移

단위 : %

區 分	1 9 6 2	1 9 7 7	1 9 8 5
서울 特別市	26.9	45.0	41.6
直轄市	9.6	17.5	18.9
道	13.5	12.4	16.6
市	15.4	8.1	11.0
郡	34.6	16.9	12.0

자료 : 內務部, 地方財政年鑑, 各年度.

되고 있음으로써 자립기반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울특별시의 경우 全體地方稅收入中 서울시가 점유하는 地方稅의 비중이 '62년에는 26.9%에 불과하던 것이 '77년에 45.0%로 괄목할만하게 증대했으며, '85년 현재에도 41.6%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직할시의 경우도 '62년에는 9.6%에 불과하던 지방세 점유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5년에는 18.9%까지 증대하였다. 또한 道에 있어서도 서울시, 직할시에 비해 稅收占有比率의 증가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긴 하지만 '62년의 13.5%에서 '85년엔 16.6%로 증대하였다. 반면에 市地域에 있어서는 稅收占有率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62년에 15.4%이던 세수점유비율이 '85년엔 11.0%로 줄어들었고, 郡의 경우에는 '62년에 34.6% 수준에 이르던 세수점유비율이 '85년에는 12.0%의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地方稅源의 확충은 기초자치단체 특히 郡單位の 財政的地位를 약화시킬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러한 지방세수입의 자치단체별 불균형의 實狀을 가중변이계수를 이용하여 개별 지방세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表 6〉은 지방자치단체 계층별(특별시—직할시—道—市—郡) 1人當 平均 지방세수입에 당해 자치단체계층의 인구비중을 가중하여 계산한 가중변이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表 6〉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마권세, 재산세, 농지세 등의 獨立稅의 경우에는 전체의 가중변이계수가 38.65에 이르르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의 지역간 분포보다는 자치단체별분포의 불균형이 훨씬 심하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반면에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의 目的 地方稅의 경우에는 가중변이계수가 25.60으로 나타나 자치단체계층별 세원분포에 있어서도 독립 지방세에 비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를 다시 개별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직할시에 대한 편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세, 자동차세, 마권세는 서울시에 대한 편중도가 높아 가중변이계수가 각각 32.81, 35.72, 84.15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농지세는 郡地域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비교적 고른 세원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세목으로는 도축세(12.56), 재산세(21.75), 사업소세(19.43) 등을 들 수 있으며, 또한 담배판매세도 자치단체계층별 가중변이계수가 7.87에 불과해 기존의

〈表 6〉 地方稅의 自治團體別 稅源分布의 隔差⁽¹⁾

(1인당 1원기준)

區 分 稅 目 別	1人當 平均 稅收入						加重標準 偏 差	加重變異 係 數
	서울시	직할시	道	市	郡	全體平均		
취득세	14,198	10,919	5,922	—	—	10,346	2,260.54	21.85
등록세	17,022	11,204	4,552	—	—	10,926	3,325.33	30.44
면허세	1,511	1,125	415	—	—	1,017	304.29	29.92
주민세	9,896	4,558	—	4,052	1,577	5,021	1,597.14	32.81
자동차세	6,268	2,777	—	2,110	759	2,979	1,064.03	35.72
도축세	351	327	—	453	233	341	42.84	12.56
마권세	609	—	—	—	—	152	127.91	84.15
재산세	9,018	6,655	—	5,587	2,543	5,951	1,294.27	21.75
농지세	15	87	—	483	5,853	1,610	1,426.26	88.59
독리세(보통세) 계	58,889	37,651	10,888	12,685	10,965	23,770	9,186.20	38.65
도시계획세	4,873	3,596	—	2,936	537	2,986	890.05	29.81
소방공동시설세	1,448	1,130	—	1,059	337	994	232.47	23.39
사업소세	1,998	1,854	—	1,798	667	1,579	306.85	19.43
目的稅計	8,318	6,579	—	5,793	1,541	5,558	1,422.65	25.60
담배판매세	45,964	36,995	—	34,992	30,794	37,186	2,927.90	7.87

註(1) 인구규모는 1982년 현재 시도별인구를 기준으로 함.

자료 : 재무부, 지방재정연감 (1985)에 의거하여 작성함.

어떠한 지방세목보다도 고른 지방자치단체계층별 세원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방세원의 지역간 분포의 격차와 자치단체별 분포의 격차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기 全體平均의 가중변이계수(地域間 分布 15, 自治團體別 分布 21 기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격차의 정도를 高低로 나누어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보기로 한다. 〈圖 1〉에 의하면 지역간 분포의 격차가 큰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마권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등의 稅目은 역시 자치단체별 분포에 있어서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稅目들의 지역간, 자치단체별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지역간 분포가 고른 재산세, 도축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담배판매세 등은 세원의 자치단체별 분포에 있어서도

		自治團體別 分布의 격차	
		高	低
地域間分 布의 격 차	高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마권 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취득세
	低	—	재산세, 도축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 세, 담배판매세

〈圖 1〉 地方稅源의 地域間 分布 및 自治團體別 分布의 類型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목들에 있어서도 세원의 지역간 분포보다는 자치단체별 분포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역간 분포의 격차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자치단체별 분포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地方稅源의 지역별 분포에 있어서는 지역간 분포의 격차보다는 자치단체별 분포의 격차가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地方自治團體階層別 地方財政力の 隔差완화, 특히 地方財政力이 취약한 郡地域에 있어서 相對的인 財政自立水準의 提高와 地方財政의 지역간 불균형의 완화라는 두가지 목표가 다소 서로 상충되는 성격의 문제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地方稅源의 확충은 적어도 市·郡單位 지방자치단체의 相對的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는 方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제에 도달하게 된다. (6)

4. 國稅의 地域的 分布

위에서 살펴본 지방세의 지역별 분포의 격차는 國稅의 지역별 분포의 격차와 비교·평가해 봄으로써 그 상대적인 수준을 보다 명확히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地方財政의 지역간 불균형완화를 위한 지방세원의 확충이 일부 국세의 지방세이양 등 국세·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는 것

〈表 7〉 內國稅收入의 地域別 占有比

단위 : %

세 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직접세계	61.9	8.9	3.8	3.1	6.4	1.2	1.1	2.4	1.4	2.6	2.4	4.5	0.4	100.0
소득세	55.1	10.5	5.1	3.0	6.5	1.8	1.4	3.1	2.0	3.3	2.3	4.9	0.6	100.0
법인세	71.9	6.5	1.7	3.3	6.1	0.4	0.7	1.1	0.6	1.4	2.5	3.6	0.2	100.0
상속세	59.1	11.8	8.4	1.4	6.2	1.2	0.7	2.2	1.2	2.7	1.3	3.6	0.4	100.0
자산재평가세	68.0	5.0	1.2	3.5	4.8	0.9	0.2	0.9	0.7	0.8	0.6	13.3	0.1	100.0
부당이득세	0.3	64.7	—	—	—	—	—	—	—	—	—	35.0	—	100.0
간접세계	27.6	3.7	3.1	7.0	13.4	1.3	0.8	1.6	3.1	6.9	3.4	27.6	0.5	100.0
부가가치세	60.7	6.1	5.9	3.1	7.5	3.0	1.2	2.6	4.6	5.1	-0.8	-0.0	1.2	100.0
특별소비세	5.4	3.0	1.5	18.6	13.8	0.1	0.6	0.9	0.8	14.6	5.5	35.1	0.1	100.0
주세	27.1	1.5	3.0	0.3	37.3	1.0	1.0	1.4	7.6	2.7	0.8	16.1	0.3	100.0
전화세	41.5	11.0	5.7	3.6	7.6	2.9	1.8	4.9	3.3	5.7	4.0	6.8	1.2	100.0
증권거래세	92.9	1.0	0.5	0.6	0.9	0.1	0.2	0.5	0.3	1.3	0.9	0.7	0.1	100.0
內國稅計	42.9	6.0	3.4	5.3	10.3	1.2	0.9	1.5	2.5	5.0	3.0	17.4	0.5	100.0

자료 :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1985.
電氣通言公社內部資料(電話稅)

(6) 이런 점에서 가중변이계수는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의 완화와 자치단체별 불균형의 완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세원을 탐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은 의의있는 일일 것이다. 國稅의 지역별 분포의 격차 측정도 지방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加重變異係數를 이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우선 國稅의 지역별 분포를 각 지역별 國稅收入의 占有比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表 7>은 國稅 各 稅目別로 13개 市·道의 稅收入 점유비를 나타낸 것이다. 84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內國稅의 서울 집중도는 42.9%로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더욱 심한 편이며 특히 直接稅 分野(61.9%)에서 더욱 그러함을 알 수 있다. 個別稅目別로도 法人稅, 相續稅, 증권거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거의 전세목에 걸쳐 國稅의 서울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재산세평가세의 경우 경남지역이 차지하는 占有比(13.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는 인천, 경기, 경남, 전남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酒稅의 경우도 경기와 경남지역에서 접하고 있는 稅收比重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間接國稅中 일부 세목에 있어서 서울시 以外的 여타지역이 점유하고 있는 세수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의 대부분이 정유시설이 많은 인천과 경기 및 경남과 전남에서 징수되고 있고, 酒稅의 대부분이 주류제조장이 많은 경기와 경남에서 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국제징수액중 각 지역이 점유하고 있는 비중의 정도나 이의 분산도 등은 內國稅收入의 절대적인 분포의 정도를 표시하고 있을뿐 그 상대적인 분포의 수준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加重變異係數를 이용하여 내국세수입의 지역적 분포의 상대적인 수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表 3>은 國稅 稅目別 13개 市·道의 지역적 분포의 상대적인 격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1人當 平均稅收入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지역의 인구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계산한 加重變異係數를 나타낸 것이다. <表 8>에 나타난 바와같이 直接稅國稅 全體稅目的 가중변이계수는 42.42에 이르고 있어 지방세전체의 가중변이계수 수준인 16.2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방세에 비해 直接國稅의 지역별 분포가 훨씬 불균형적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직접국세 세목중에서도 法人稅(61.20)와 자산세평가세(57.94)의 지역적 격차가 특히 현저하다. 반면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등의 間接國稅의 가중변이계수는 19.30으로 나타나 지방세 전체의 평균 가중변이계수인 16.25와 비교할 때 비교적 良好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화세의 경우 가중변이계수가 16.56으로서 지방세 전체의 가중변이계수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 세원의 지역별 분포가 상당히 良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기 전화세는 농촌전화사업의 일환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어 稅源의 伸張性面에서 우수할 뿐아니라 아직 전화보급율이 낮은 市·郡地域에서 괄목할만한 신장이 예상되어 「稅源의 地域別 分布」라는 측면에 있어서 地方稅源으로서 매우 적합한 일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還給으로 인해 陰의 稅收入을 보이고 있는 경남, 경북을 제외할 경

(1인당 1원기준)

<表 8> 內國稅의 地域의 分布의 隔差⁽¹⁾

區分	地域別 1人當 平均 稅收入											加重標準		加 重 差 變異係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全國平均	偏 差
直接稅計	155,254	59,550	44,372	60,174	34,132	15,028	16,780	16,571	13,437	14,667	16,814	29,107	19,774	38,128	16,175	42.42
소득세	75,046	39,474	33,560	32,472	19,564	12,514	12,045	12,756	10,580	10,972	9,281	17,639	16,238	23,242	7,366	31.70
법인세	74,416	17,893	8,529	26,097	13,476	2,015	4,465	3,377	2,501	3,296	7,272	9,650	3,087	13,544	8,288	61.20
상속세	3,113	1,664	2,069	574	693	316	221	340	249	330	191	483	369	816	336	57.41
재산가세	2,679	518	214	1,032	399	183	49	99	107	69	70	1,334	79	526	304	75.57
부담이득세	0.0	0.1	—	—	—	—	—	—	—	—	—	0.0	—	0.0	0.00	0.00
間接稅計	86,425	30,728	45,661	164,773	89,895	19,524	16,041	14,509	37,841	49,792	15,837	112,147	30,322	54,884	1,059	19.30
부가가치세	58,886	15,757	26,905	22,545	15,562	14,241	7,304	7,255	17,142	11,405	-2,234	-99	21,322	16,615	6,080	36.00
특별소비세	5,272	7,815	6,774	136,397	28,751	375	3,684	2,622	2,804	32,782	14,872	87,207	2,514	25,528	8,714	34.14
주세	14,542	2,150	7,428	1,227	42,787	2,513	3,166	2,180	15,702	3,350	1,253	22,061	2,621	9,306	3,572	38.39
전화세	7,050	4,987	4,536	4,569	2,780	2,391	1,879	2,441	2,185	2,233	1,928	2,966	3,850	3,369	558	16.56
증권거래세	675	19	18	35	15	4	8	11	8	22	18	12	15	66	81	63.12
內國稅計	241,679	90,278	90,033	224,947	124,027	34,552	32,821	31,080	51,278	64,459	32,651	141,254	50,096	93,012	23,148	24.89

註(1) 인구규모는 1982년 현재 시도별인구를 기준으로 하였음.

(2) ()안의 수치는 경북, 경남을 제외한 가중변이계수임.

경북, 경남지역에서 附加價値稅가 陰의 稅收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포항·울산 등의 공업단지 내에서 이루어진 設備投資나 財貨·用役의 輸出에 대해 零稅率을 適用함으로써 還給稅額이 發生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1985)에 의거하여 작성.

우 가중변이계수가 26.9로 나타나 他 간접세에 비해서 세원의 지역별 분포가 비교적 고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83년 징수실적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가중변이계수가 11.31로 나타나 기존의 지방세보다 훨씬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稅收의 '安定性面에서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稅源의 地域別 分布」라는 측면에서는 지방세로서 적합한 일면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화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그밖의 간접세는 稅源의 지역별 분포가 매우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IV. 分析結果의 綜合的 評價 및 結論

現行 地方稅制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는 稅制의 公平性과 能率性, 應益原則, 稅源의 地域別 分布, 稅務行政上的 適合性 등 여러가지 原則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本 研究은 이러한 諸原則中에서 「稅源의 地域別 分布」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 地方財政이 당면하고 있는 地方財政의 地域的 不均衡이라는 문제의 실상을 분석해 보았다. 加重 變異係數라는 척도로서 지방재정의 지역적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地方稅收入의 지역별 분포의 격차를 측정해본 결과 稅源의 분포가 비교적 고른 지방세로서는 도축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 일부 稅目에 불과하고 全體 地方稅收入中 매우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등록세, 면허세 등 이전적 재산과세와 주민세, 자동차세의 지역적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地方稅 全體의 가중변이계수의 값은 國稅의 그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서 地方稅源의 지역별 분포가 國稅 稅目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間接國稅 세목중 전화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稅源의 지역별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 「稅源의 地域別 分布」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방세로서 적합한 일면을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전화세의 경우에는 세수의 신장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전화보급율이 낮은 市·郡 지역에서 괄목할만한 신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間接國稅보다는 최근 농지세계의 개혁으로 인한 세수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專賣益金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흡수하는 형식으로 고안된 담배판매세가 가장 고른 地域別 分布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담배판매세는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의 완화와는 다소 상충된 성격의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지방자치단체별 稅收入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目標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등 地方稅로서 매우 적합한 稅源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諸 分析結果를 놓고 볼때 지방재정의 지역적 불균형은 財產稅等 一部 稅目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관련 지방세원의 지역별 분포의 격차와 이러한 격차를 상쇄시킬만한 他 地方稅源의 결여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地方財政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세 세목중 고른 지역별 분포를 보이고 있는 財產稅 등 일부 稅目的

財源調達機能을 강화시키거나 현재 일부를 지방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專賣益金の 地方財源活用化의 比率을 높이는 방안, 또는 현행 間接國稅 稅目中 고른 지역별 분포를 보이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일부 稅目이나 電話稅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國稅와 地方稅의 合理的 調整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이러한 地方財政의 地域間 不均衡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중에는 지방자체단체계층별 地方財政力의 격차완화, 특히 郡單位地域의 財政力隔差의 완화라는 目標와 다소 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점에서 地方財政의 地域間 不均衡의 완화는 최소한 郡單位地域의 상대적인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制約이 뒤따르게 된다. 아울러 本稿에서는 地方稅制의 諸 評價基準中에서 「稅源의 地域別 分布」에 한정되어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地方稅源擴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公平性과 能率性, 應益原則, 稅形行政上의 適合性 등 여타의 地方稅制評價基準에 의한 妥當性 검토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